
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, 연구윤리지침의 운영,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- 학술지원사업의 성과(이하 “학술성과”)의 소유·관리에 대하여, 사업수행기관인 대학·연구기관·학술단체(이하 “대학등”)가 연구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술성과의 유형과 학술지원사업 참여 유형·비중 등에 따라 연구자 또는 대학등의 공동소유로 하거나,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인 대학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면서, 사업수행기관 외에 연구자 등이 학술성과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및 국가소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.¹⁾

1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그런데 안 제16조제2항은 “학술성과의 유형,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 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”을 고려하여, 학술성과를 사업수행기관인 대학등 외에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다만, 같은 내용을 규정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6조제2항은 “연구개발성과”의 정의규정²⁾을 두고 있어 그 유형을 예측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술성과를 “학술지원사업의 성과”로 정의할 뿐이어서, “학술성과의 유형”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또한, 현행법 제16조³⁾에서 대학등이나 연구자의 연구활동 성과를 “학술 성과”로 명칭하고 있는바, 제16조에 따른 “학술 성과”와 안 제16조의2에서 인용한 “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통한 성과”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, 안 제16조의2의 “학술성과”를 “학술지원성과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,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(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)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.

1.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4.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**학술진흥법**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“연구개발성과”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, 시설·장비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를 말한다.

6. ~ 9. (생략)

3) 「**학술진흥법**」 제16조(학술 성과의 활용)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**학술 성과**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,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6조의2(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·관리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<u>성과(이하 “학술성과”라 한다)</u> 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<u>학술성과</u> 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제16조의2(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·관리) ① ----- ----- <u>성과(논문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를 말한다. 이하 “학술지원성과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학술성과</u> 의 유형, <u>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대상자 참여 유형</u>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<u>학술성과</u> 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	②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<u>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</u>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(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) <u>학술성과</u> 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<u>학술성과</u> 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개정안과 같음)
2.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<u>학술성과</u> 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2.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

3. (생 략)	3. (개정안과 같음)
4. 그 밖에 대학등이 <u>학술성과</u> 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4.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 -----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<u>학술성과</u> 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 -----.
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<u>학술성과</u> 의 관리 기준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<u>학술성과</u> 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 <u>학술지원성과</u> ----- -----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